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테마파크 사고 관련 보고 및 조치 절차 강화 >

■ 이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32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테마파크 사고 관련 보고의무 및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3
2. 테마파크 사고기록대장 배포·작성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이기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5. 6. 13.

다. 회 부 일: 2025. 6.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마파크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테마파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테마파크업자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규칙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테마파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에 관하여 대장에 기록을 남기는 목적은 사고 유형을 파악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중대한 사고를 보고하는 절차나 사고 조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테마파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테마

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내용과 자료의 제출 또는 현장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기록대장을 매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배포 및 사고기록대장을 분석·검토하여 동일·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테마파크 사고 관련 보고의무 및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근거 등 마련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사고 사실,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또는 현장조사 실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근거 및 조사결과 통보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테마파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 ----- ----- -----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_____.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즉시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 중대
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
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
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
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가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u>결과에 따라</u> 해당 테마파크 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테마파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 3. (생략) 4. <u>제33조의2제3항에</u>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u>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u> ⑥ ----- ----- -----<u>결과</u> <u>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받은 결과에 따라</u>----- ----- ----- ----- ----- ----- -----. 제82조(벌칙)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33조의2제6항에</u>----- -----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테마파크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테마파크업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테마파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테마파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테마파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테마파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그런데 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는 규정된 바 없고, 사고 조사 및 테마파크 시설 사용 중지 명령 등의 권한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주어

져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고조사 등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테마파크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테마파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실과 해당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결과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사용중지·개선·철거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대응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¹⁾, 개정안의 사고조사위원회 구성과 중복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의 재난관리주관기관임.

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사회재난 유형
차. 문화체육관광부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법상 테마파크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부재로 사고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나, 테마파크시설은 중대한 사고 발생의 빈도가 매우 낮고(‘23년 이후 사망사고 없음), 대부분 사고유형이 놀이기구 멈춤 등 비교적 단순하다는 점²⁾을 고려할 때 별도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은 과도한 행정비용 발생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2) 참고자료 <최근 5년간 테마파크시설 중대한 사고 발생 현황> 참조

2. 테마파크 사고기록대장 배포·작성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테마파크 사고기록대장을 작성·배포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912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u><신설></u>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u>제33조의3(사고기록대장의 작성·보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검토하여 동일·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u>

	<u>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배포와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테마파크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테마파크업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 이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도록 시행규칙에 관련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고 관련 기록과 이후 대책 마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유기시설·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영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장소, 사고 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조치 내용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5. 사고 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② 유원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테마파크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 사실과 조치 내용 등을 보고받고 이를 종합하여 사고기록대장을 작성·배포하고, 사고기록대장 분석·검토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재 운영 중인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에서 ‘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³⁾, 개정안에서와 같이

3) 「관광진흥법」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테마파크업자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사고기록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하는 경우, 관련 절차와 세부적인 업무 내용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테마파크시설 안전 관련 정보가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입법 효율성을 위하여 사고기록대장의 관리·배포와 관련하여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7

참고

최근 5년간 테마파크시설 중대한 사고 발생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 연도	‘20	‘21	‘22	‘23	‘24
사망	1	-	3	-	-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 심각 손상	-	-	1	-	-
2주 이상 입원치료 필요자 3명 이상 발생	-	-	-	-	-
1주 이상 입원치료 필요자 5명 이상 발생	-	-	-	-	-
30분 이상 기구 운행 중단되어 인명구조 시행	-	1	4	1	-
총계	1	1	8	1	-

* 출처: 테마파크 안전정보망(<https://apa.or.kr>)